

농업법 규정에 따른 SNAP 소매점의 EBT 장비 비용 지불 기한 임박

워싱턴, 2014년 9월 17일 - 2014년 농업법(Agricultural Act of 2014 또는 Farm Bill이라고도 함)에서 하원이 요구한 바와 같이 미국농무성(USDA)의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수혜자들에 대한 판매 권한이 있는 소매업자들은 자신의 전자이체(EBT) 장비, 용품 및 관련 서비스를 위한 준비를 완료해야 하며 그에 따른 지불을 해야 한다. USDA 공무원들은 소매업자들이 9월 21일까지 이러한 준비를 완료하지 않는 경우 SNAP 혜택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며, 아니면 현재 주 정부들이 이용하는 처리 담당 업자들의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하는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케빈 칸케논 농무성 차관은 “EBT가 SNAP 수당 발급 방식을 바꿨다”며 “EBT는 SNAP 거래 방식을 현대화시켰고 납세자의 세금을 절약했으며, 고객, 소매상, 주정부 및 연방정부 행정 공무원들의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소매상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법률 시행에 대비하여 반드시 준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든 SNAP 소매상들에게 다시 한 번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Farm Bill에 따라 일부 예외 대상을 제외한 모든 SNAP 소매점은 9월 21일까지 자신들이 선택한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EBT 장비와 서비스를 임차하거나 구매해야 한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결제 장비를 이미 갖춘 소매점은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 업체에 연락하여 기존의 장비에 EBT 서비스를 추가하면 된다. 이러한 변경 내용에 대해 이전에 우편, 이메일, 전화를 통해 연락을 받은 적이 없는 소매점들은 주 정부에 현재 EBT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부터 청구서를 받거나 기존에 사용하던 장비가 작동하지 않으면 당황할 수도 있다.

이 법률의 시행되기 전까지 공인 소매점들은 주정부로부터 무상으로 SNAP EBT 장비를 받을 수 있었다. 군납 판매소, 공동주거시설, 비영리 식품구매 협동조합, 농산물 시장, 직판 농업인 등을 비롯한 SNAP이 인정하는 일부 기업들은 이러한 새로운 면제 대상이지만 대다수의 소매상들은 위의 기한까지 반드시 자신의 장비와 서비스를 갖추어야 한다. 면제 대상 소매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면제 대상이 아닌 소매점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fns.usda.gov/snap/ebt에서 확인할 수 있다. EBT 장비 및 서비스를 구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소매점은 [SNAP EBT Third Party Processor List](#)를 참조하면 된다.

칸케논 차관은 이러한 변화가 프로그램 수혜자들의 식품 구매 가격을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NAP 규제에서는 EBT 장비 및 서비스의 소매점 비용이 SNAP 수혜 가구에 전가될 수 없도록 계속해서 규정하고 있다. 소매점은 SNAP 구매의 최소 달러 금액을 설정하거나 SNAP 고객이 EBT 수당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거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EBT는 2004년 이래 SNAP 수당 배포 및 이용에만 사용함으로써 종이 식품구입권 발행 및 교환으로 인한 성가시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절차를 제거하는 데 기여해 왔다. 또한 EBT는 개별적 거래의 전자 기록을 생성하여 SNAP 급부의 불법적 사용을 더욱 쉽게 적발하게 됨으로써 이 프로그램을 결함 없이 운용할 수 있는 비약적인 발전에도 기여했다.

지난 3월 Farm Bill이 통과된 후 USDA는 이 법률 시행의 영향을 받는 소매점들을 대상으로 한 이메일, 직접 우편, 전화 통화 더불어 식품영양서비스부(Food and Nutrition Service)의 웹사이트 공지를 통해 소매점들에게 이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USDA는 현재 미국식품상협회(National Grocers Association), 식품마케팅연구소(Food Marketing Institute), 미국편의점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Convenience Stores), 주소매점협회를 비롯한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지역 소매점들이 중단 없이 SNAP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자 계속 노력하고 있다. 주정부 및 주정부에 EBT를 공급하는 업체들도 이 법률의 영향을 받는 소매점들이 원하는 경우 계속해서 SNAP 고객들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소매점들과 의미 있는 의견을 교환해 왔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소매업체는 식품영양서비스부(Food and Nutrition Service)에 이메일 RPMDHQ-WEB@fns.usda.gov로 연락해야 한다. 지역 내의 공인 소매점을 찾는 SNAP 고객은 [SNAP Retailer Locator](#)를 방문하면 된다.

SNAP은 기아 퇴치를 위한 미국의 일선 부서로서 매달 수백만의 저소득 가정과 개인들에게 식품이 제공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SNAP은 USDA의 15개 영양 지원 프로그램 중 가장 큰 프로그램으로 기아 퇴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SNAP은 4600만 명 이상의 저소득 개인들의 매월 식비 예산에 가장 중요한 도움을 제공한다. SNAP 수혜자의 거의 50%는 아동, 9%는 60세 이상, 그리고 수혜자의 40% 이상은 소득이 있는 가구에 거주하고 있다.

##

USDA는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주입니다. 차별 행위에 관해 신고하려면, USDA, Assistant Secretary for Civil Rights,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Civil Rights, 1400 Independence Avenue, S.W., Stop 9410, Washington, DC 20250-9410을 수신인으로 신고서를 발송하거나 무료전화 (866) 632-9992(영어) 또는 (800) 877-8339(언어장애자 전화: TDD) 또는 (866) 377-8642(영어 연방중계 서비스) 또는 (800) 845-6136(스페인어 연방중계 서비스)를 이용해 주십시오